〈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 20120100220

최초 등록일 : 2012-05-21 최종 등록일 : 2025-03-24 www.깡돈.kr

깡 돈

정보공개서

제이에이치(JH) 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제이에이치(JH) 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20, 201호(상계동) [대표 전화번호] 1688-9266 [대표 팩스번호] 02-939-9266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1688-9266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적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깡 돈 외6		서울 및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20, 201호(상계동)				
제이에이치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JH) 푸드	개인사업자		2012.01.08	전준호	1688	-9266	02-939-9266	
	법인등록번호	7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업자등록번호 21'		7-10-55121	

-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깡돈	
상 호	깡돈 OO점	
상표(서비스표)	ッ を テッュスる さ モ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_	_	_	68,573	_	_
2023년	_	_	_	74,585	_	_
2024년	_	_	_	68,168	_	_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재무상황표를 작성치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고 근거자료는 별첨합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선년역구	이금	연 작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전준호	대표	2012.1.~현재	대표	회사총괄	
관련 임원	선단모	41.11.	2012.1.7 원제	4155	의 시 이 된	
가맹사업	한상우	이사	2020.11.~현재	이사	상품관리	
관련 임원	원하다	١٠٠٢	2020.11.7 연세	~1/\F	Öb컨니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식천구(청)
2024년 12월 31일	2	0	0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당 영업표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2012.3.~현재	깡돈(등록번호: 20120100220)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경영
가맹본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2024.12~현재	검정고무신(등록번호: 20200128)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점 경영
가맹본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생존치킨(등록번호: 20210061)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 경영
가맹본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2021.10~현재	꽃쟁반(등록번호: 20210062)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 경영
가맹본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파송송계란탁(등록번호: 20212192)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 사업경영
가맹본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돼지기사(등록번호: 20212193)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 경영
가맹본부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사업 경영	예정	고기추가장칼국수(등록번호: 20212161)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 외식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wspoland 강 돈 (상표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상표사용	출원 2012.02.13 등록 2013.05.22	출원 4120120004494 등록 4102594210000	전준호	2033.05.2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2년 3월 26일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 , , , , , , , , , , , , , , , , , , ,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이에이치(JH)	깡 돈	전준호	2012.01. [~] 현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20,
푸드	70 E	신군오	2012.01. ~ 현재	201호(상계동)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허	종
까 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 근	기타외식	돼지특수부위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2J 0J	2022.12.31.			2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7	27	0	28	28	0	25	25	0	
서울	10	10	0	12	12	0	10	10	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	1	0	
세종										
경기	17	17	0	16	16	0	13	13	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남				1	1	0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2	9	_	4	_	27
2023	27	8	_	7	_	28
2024	28	4	-	7	-	25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사중/하므	어어꼬기	정보공개서	성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제이에이치	깡돈	20120100220	기타외식	27/-	28/-	25/0	
(당 영업표지)	(JH) 푸드	70 E	20120100220	11444	21/-	20/-	25/0	
가맹본부	제이에이치	검정고무신	20200128	포차	-/-	-/-	1/-	
/ でも十	(JH) 푸드	行後五千色	20200120	エハ	_/_	_/_	1/-	
가맹본부	제이에이치	생존치킨	20210061	치킨	-/-	_/_	-/-	
/ でも十	(JH) 푸드	생근시신				_/_	/	
 가맹본부	제이에이치	꽃쟁반	20210062	기타외식	1/-	1/-	1/-	
/ 73七十	(JH) 푸드	동경인 -	20210002	71447	1/	1/	1/	
가맹본부	제이에이치	파송송계란	20212192	분식	-/-	-/-	_/_	
/ 7 3 七十	(JH) 푸드	탁	20212192	七年	_/_	_/_	-/-	
기메버버	제이에이치	디기기기기	20212102	기디이시	,	,	,	
가맹본부	(JH) 푸드	돼지기사	20212193	기타외식	_/_	_/_	-/-	
가맹본부	제이에이치	고기추가	20212161	기타외식	-/-		_/_	
/ 7 7 8 七十	(JH) 푸드	장칼국수	20212101	기나되석	_/_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전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지역	전년도말	연간평균 대	매출액	연간평균매출	액(상한)	연간평균매출	들액(하한)	비끄
44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ડો.∻ો	면적	귀칭	면적	
		매출액	3.3m ² 당	상한	3.3m ² 당	하한	3.3m ² 당	
전체	25							
서울	1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 세종 경기 13 강원						
인천 광주 대전 물산 1 세종 경기 13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부산					
광주 대전						
대전 을산 1 세종 경기 13 경비 기계	인천					
울산 1 세종 7 경기 13 강원 중북 7 충남 7 전북 7 전남 7 경북 7	광주					
울산 1 세종 7 경기 13 강원 등북 1 중남 전북 7 전남 7 경북 7	대전					
경기 13	울산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세종					
충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1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충북					
전북 전북 전남	충남					
경북 경남 1 · · · · · · · · · · · · · · · · · ·	전북					
경남 1	전남					
제주		1				
	제주					

※ 당사는 가맹점에 소스와 육류 일부 품목만을 공급하고 있어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 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	25	1,31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덕	단위: 천원, 브	비고	
一丁正	구선	기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끄
합계		2024.1~2024.12	0	0	0	
광고	소계					
판촉	소계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49-5	02-930-416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 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화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제이에이치(JH) 푸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 개월 소요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 체결이내	<u>.</u> 후 1일	계약기간 내에 가 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 없는 사유 로 계약이 해지	점사업자의 귀책사	영업표지 사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이내	후 1일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 환되지 않음	
총계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10%)와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30%), 노하우제공(30%),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10%), 기타 개업 지원 대가(20%)입니다.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당사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현금)보증금	0
합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49.5㎡[15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주방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13,200	880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기존집기 활용가능
의탁자	가맹본부	3,300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4인기준 ※기존집기 활용가능
간판	가맹본부	3,300		별도약정에 따름	발주 전 계약취소	※가맹점 직접시공 가능
인테리어	가맹본부	21,450	1,430		발주 전 계약취소	※가맹점 직접시공 가능
홍보물	가맹본부	660			발주 전 계약취소	배너 등
총계		41,910	2,794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 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철거, 화장실, 정화조, 폴딩도어, 도시가스, 포스, CCTV, 에어컨, 전기증설, 소방, 닥트 입상, TV, 오디오, 음향시설, 외부테라스 등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관리감독의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장
가맹점사업자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 <i>지</i>	구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 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110천원	매월 10일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 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440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지정업체	사용분에 따라				임대

(미정)	변동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와 특허, 의장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	
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지체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및 위반기간에 대하여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	
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제8조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5

-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상기 상품, 원·부재료는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고 지정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경제적이익수취여부」 참조)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 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년 당사의 전체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이익 중 깡돈 가맹사업은 약90%, 꽃쟁반은 약10%입니다.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 ※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 참조	리스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별첨[공급상품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소비자 외 제3자	리스트] 참조	판매할 수 없음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5.1월 기준
참조		열절도 함께이지에 증지	2025.1 恒 / 1 世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원인 집중 점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특수부위 전문점	깡돈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로 500m을 원칙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 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 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 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 당사는 매장 POS 등 가맹점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일부 품목만 납품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 가맹사업의 직영점이 없으며, 그 외 채널에서 기타 오프라인 판매 매출이 없어, 당 가맹점 판매 매출액 비중이 전체 판매 매출액 비중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 180 D 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 00 원 기원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_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4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14조

- 1. 상품대금, 정기납입비 등의 금전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2. 매출정보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상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 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5.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위치변경하거나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한 경우
- 7.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14조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 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 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_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짱돈]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4:00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보기보다 기계기보다		분담 절차	비고	
十七	8고 3억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림 설사	H 14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평고 세획 중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행사)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단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2조 (판촉)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와 판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6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 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각 조항에 위약금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이 본조의 위약금 규정보다 우선하	
여 적용된다.	-1) 1 4 -7
: 일금 삼십만원(₩300,000) X 10개월(단, 10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제14조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	
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	
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제15조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ll 1032
④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금 일천만원	제16조
(₩10,000,00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1104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66㎡)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7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_	6페이지 참조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발급	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7페이지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_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7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약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				
	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제외사유	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				
	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1	~] \\] ~] ~]]		3 . 3 . 3	-1 01-1-1	2 +222	,
	지원정책	수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깡 돈 - 깡통구이고기집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可可以口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CRM	해당없음		진행시
테스터	해당없음		사전협의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4일	44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최초교육, 수시교육, 보수교	1제9소(교육 및 우년
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및 경영지도)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	
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설비, 기기의 설치,	
상품 또는 원 · 부재료의 입고, 대금의 지급여부, 최초교육이수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제11조 (영업)
을 받고 개업을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지 못하	\\\\\\\\\\\\\\\\\\\\\\\\\\\\\\\\\\\\\\
여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	
게 있다.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설비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깡 돈 - 깡통구이고기집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명	권장가격	상품명	권장가격
대구막창	(180g) 14,000	1set(막창, 뒷고기, 덜미살)	(600g) 41,000
뒷고기	(180g) 13,000	2set(삼겹살, 덜미살, 뽈살)	(600g) 39,000
덜미살	(180g) 14,000	3set(뽈살, 뒷고기, 덜미살)	(600g) 38,000
뽈살	(180g) 13,000	돼지껍데기	(150g) 7,000
항정살	(180g) 14,000	된장찌개	5,000
가브리살	(180g) 14,000	돼지김치찌개	7,000
뒷통구이	(600g) 39,000	밀면(물, 비빔)	7,000
뒷마카세	(500g) 38,000		
기타 음료, 주류	2,000	공기밥	1,000

[※] 상기 판매상품은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통지함

[별첨]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가맹점리스트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 ロ '	베시겐(a	^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_				
	맹사업거래의 공정 제2항에 따라 위외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장 귀:	⊼ l				
	지점장	ΥĮ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깡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 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u> </u>	<u> </u>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밍	생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u> </u>	부 : (인) 또는	니며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
(Z	원칠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쌍돈] 가맹본무는 '가맹사업거래의공성화0 게 당 가맹사업의 <u>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u>	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 <u>!근가맹점현황문서</u> 를 제공합니다.	사)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	냉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		
	부 :(인) 또는	서명
수 령 (